

#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중노년층의 노후생활계획을 중심으로 -

Life Planning Program for the Elderly\*

- Analysis of Life Planning of Middle-aged and Aged -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홍 성 희

중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경 희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곽 인 숙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 순 미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 혜 연

여주대학 가정과  
조교수 김 성 희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Hong, Sung Hee

Dept. of Home Management, Joongang University  
Professor : Lee, Kyung Hee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ersity  
Professor : Kwak, In Sook

Dept. of Consumer Sciences 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Soon Mi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Kim, Hye Yeon

Dept. of Home Economics,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Assistant Prof. : Kim, Sung Hee

##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e of the living arrangement plan, the housing plan, and economic plan for elderly's life and contributing factors to their life plan. The sample in this study consisted of 713 middle-aged and aged couple living in Korea. Statistics employ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chi^2$  test, logi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middle-aged and aged couple were planning to live independently in their elderly life. The husband's age, religion, living area, total income, total asset, home ownership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living arrangement of the middle-aged and aged. They had a plan to live in single detached house in their elderly life. And husband's age, educational attainment, job, and living region were affecting the housing type in their elder life. The middle-aged and aged people had a economic plan that they estimated 970,000 won as living cost in their elderly life. And the factors affecting living costs were husband's educational attainment, job, and total asset.

##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 중 하나로 독신가구의 증가와 직계형가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즉, 독신가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6년 2.3%에서 1990년 9.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직계형가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에 20.6%에서 9.5%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독신가구의 증가와 직계형가구의 감소는 노인가구의 증가와 관련있는데, 즉 1966년의 경우 60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2%, 1.8%였으나, 1993년에는 8.4%, 3.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는 2000년 이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0년 이후 전체인구의 1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증가현상은 젊은 인구층의 부부중심 가족생활 선호,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 등을 감안해 볼 때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가장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효를 지고의 가치로 보았던 사회적 풍습과 전통에 따라 부모의 부양은 자녀에 의해 수행되었다. 한편 현재 노년층은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행기에서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능력을 자녀교육과 독립, 결혼 등에 필요한 준비에 투자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와 계획은 하지 못했으나

자녀세대의 가족규모와 형태의 변화, 여성 취업, 부모부양의식의 약화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기 보다는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거나 실제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가옥 등, 1994). 이것은 현재 노년층의 부양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긴 노년기를 맞게될 중년기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생활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인의 생활분제란 일상생활 및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부양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에 시간을 소비하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시간, 금전, 공간, 에너지 등의 생활요소와 관련 되어 있다(문숙제 외, 1986). 이때 어떤 생활요소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갖고 있는가의 여부는 개인, 가정, 나아가 사회의 부양능력과 유기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어서 노인부양의 초점이 되며 결과적으로 노년기 생활설계를 위한 계획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노년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인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문제 등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거나 부양실태를 밝힌(김태현 외, 1987; 최순남, 1987)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개인과 가족의 부양능력 뿐 아니라 사회의 분담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노년층의 생활실태에 초점을 맞춘 결과 노년기를 대비한 장기생활적인 생활계획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노후 생활설계를 경제적 준비 또는 기혼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후생활계획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부양계획과 주거계획,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중노년들이 준비하고 예상하는 다양한 생활계획의 유형과 개인의 생활계획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노년층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노후생활설계를 파악하게 해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가족 및 사회기관의 노인부양을 위한 다양한 생활계획 결정 뿐 아니라 각 부양주체에서 제공하는 노인부양 서비스의 양 및 질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년기 생활계획

노인의 일상생활 유지 및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부양과정은 금전, 공간, 에너지 및 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요소에 대한 개인, 가정, 사회의 부양능력에 의해 그 범위와 내용이 결정된다(문숙재 외, 1996). 즉 노년기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누가 부양의 주체가 되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있다. 따라서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생활설계는 노인들이 선호하는 부양형태와 관련하여 생활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제시하기 위한 부양계획,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독립적인 생계비 조달을 위한 경제계획, 노년기의 일상생활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보와 관련된 주거계획의 세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자녀교육과 독립에 대부분의 경제적 자원을 소비하여 자녀독립 후 노인세대

가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사회보장방식에 의해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자녀세대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대사회에서는 노년기 생활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부양형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즉 자녀세대와 별거하여 생활의 독립성과 편리성을 우선으로 노인 자신이나 노인부부가 부양을 책임지는 독립적 부양, 자녀와 동거하면서 관심과 애정 등의 정서적 지원을 받는 자녀부양 또는 부양시설에 의한 의존적 부양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노년기의 생활설계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부양유형계획은 살 장소에 대한 주거계획과 관련된다.

노년기에는 심신이 쇠퇴하고 일상생활능력이 점차 제한되므로, 주택이 심신의 노화에 대처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한다(전명숙, 1995). 즉, 노인의 은퇴, 노인을 위한 사회적 공간 부재, 그리고 신체적 노화로 인해 노년기의 주거는 노인생활의 중심이 되는데, 주로 가정에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노인의 생활양식을 충족시키고 신체적 변화를 보완할 수 있는 주거 내 시설이나 주택유형 등은 노인의 신체관리 및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며, 노인의 생활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심영 외, 1996).

이와 같은 노인의 부양계획과 주거계획은 노인의 재정적 자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노년기의 경제계획은 노인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다른 영역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최근 노인기는 과거에 비해 길어지게 되었으며, 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노년기 이전과 유사한 경제수준을 누리려는 경제적 목표를 갖게 되었다. 또한 가계의 재정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됨으로써 현재 보유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충족 뿐 아니라 미래의 향상된 생활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은퇴 이후의 생활유지나 예비적인 저축, 또는 상속 등 미래의 경제적 준비를 원하게 되었다(김연정, 1998).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이상과 같은 노인의 부양 계획, 주거계획 및 경제계획은 노인의 생활계획의 중심부분으로 노년기 생활설계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된다.

## 2. 노년기 생활계획의 실태

### 1) 노후부양계획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부양의 주체가 자녀 또는 가족이 되는 가족부양의 형태를 유지해 왔으나 사회변화에 따라 노후부양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노인인구구조, 가족구조 및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자녀세대의 부모부양이식이 약화되었고, 부모세대도 경제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의 연령, 건강상태와 일상생활능력에 따라 의존적 부양이 불가피해지는데, 이 때 가족이 노인의 부양과 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란 어려워진다. 노인의 의존적 부양에는 자녀부양 이외에 의존정도와 의존시설에 따라 유료양로원, 주간보호시설, 노인병원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따라서 노후부양유형은 의존도에 따라 독립적 부양과 의존적 부양으로 나눌 수 있으며, 노후에 전통적인 장남위주의 가족부양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독립적인 부양을 하는가 또는 자녀 및 부양시설에 의존하는가의 문제는 노년기에 요구되는 정서적 부양, 경제적 부양 및 신체적부양 등(김태현 외, 1997) 모든 부양내용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이 어떠한 부양유형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되어 왔는데(원영희, 1996), 첫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원하는 부양형태를 결정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노인의 연령, 배우자 유무,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상 독립적 부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노인은 자녀와 별거하는 독립적 부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반면 노인이 독립적인 주거를 영위할만큼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

이 높다.

둘째, 특정사회가 규정하는 문화규범에 따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책임 및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 부모와 자녀세대의 동별거형태 등에 대한 규범적 유형이 다르게 강조된다.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 및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며 선호하는 것(서병숙, 1989)은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 아래 효 및 가족유대를 강조해 온 문화규범에 기인한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부양형태에 대한 문화적 규범이 전환되어 감을 암시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김종숙(1987), 홍숙자(1992)의 연구에서 자녀와의 동별거형태가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 변화의 추세를 반영해준다. 또한 부양형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독립적 부양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가옥 등(1994)의 연구에서는 1936명의 노인 중 46.4%가 자녀와 따로 살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1989)에서 조사된 자녀동거희망비율이 83.3%, 68.2%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볼 때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현재 중년층 역시 노인이 되었을 때 선호하는 부양형태는 역시 독립적 부양으로서, 임정빈 등(1995)의 연구에서는 66.2%가 자녀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신영숙(1998)의 연구에서는 81.1%가 노부부만의 독립적 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문화규범이 변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2) 노후주거계획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 육체적·정신적·사회적 요구가 변화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할 뿐 아니라 개인적 특성과 욕구에 따라 적합한 주거 환경과 주거시설을 개별화하여 선택하거나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Cavanaugh, 1996). 이러한 주거에 대한 계획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는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에 더 많이 세우고 있었으며, 노인의 연령, 건강상태,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장

은정, 1990).

노인은 사회활동에서 물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주택내에서 보내게 되므로 주택유형 및 그에 따른 구조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노인주택의 형태와 질은 노인의 독립성, 안정성, 프라이버시, 사회활동에의 참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의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노인기에는 안락한 주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커지므로 노인의 신체적 변화와 친숙해진 환경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노인의 정서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할때 노인들에게 주택의 유형은 더욱 중요하다.

현재 노인들중 과반수 이상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특히 농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가옥 외, 1992; 장운정, 1990). 중년층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 학력, 직업에 관계없이 노후 희망주택유형으로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필 외, 1995; 이경희, 1995).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가족생활주기 단계중 부부만 사는 노인기에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홍형욱, 1989; 김대년, 1992)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박경란 외(1995)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주택유형에 대한 선호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연령이 60대 초반인 노인들은 단독주택에 거주하기를, 70대 초반인 노인들은 다세대/다가구주택에 거주하기를, 70대 중반이후인 노인들은 저층이나 고층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고밀도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부산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단독주택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저층,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공동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단독주택을 선호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적 불편함과 주택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

인의 연령에 따라 건강상태, 자산, 개인적 욕구 및 성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3) 노후경제계획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쇠와 심리적 고립과 소외감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뿐 아니라 노년기의 많은 문제해결과 관련된 것이 경제력이다(이가옥 등, 1990). 그러나 노년기의 경제적 문제는 당면한 해결이 어렵기때문에 노년기 이전부터 노후경제생활을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퇴 전에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은퇴 후 소득과 지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중앙일보, 1996. 9. 8.).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소득과 지출, 자산의 수준을 통해 알아본 민재성 등(1993)의 연구에서는 1985, 1989, 1990, 1991년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소득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최근에는 연금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자녀보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가계의 소득원을 보면, 가계 소득을 자녀의 원조에 의존하는 가계가 63.7%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계획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중년기 가계의 경우 노후준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경제문제를 들고 있으며, 이는 경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기영 외, 1995). 이와 같은 사실은 노년기 이전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장기적 경제계획이 노후에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후경제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1992)의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이 61%로서 준비를 하는 노인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성숙 등(1992)의 연구에서는 도시중년가계 중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가계가 전체의 1/4를 차지하였으며 노후준비방법으로 금융저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중년기 가계

가 의도적인 노후준비를 하고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관리방법 이외에 특별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함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의 경제계획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실제적인 경제력의 감소로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나, 중년기부터 적극적으로 경제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노년기 생활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노년기의 경제계획은 재정적 자립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다른 영역의 생활설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 3. 관련변수 고찰

#### 1) 연령

노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므로 고령일수록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연령이 은퇴유무, 건강상태, 배우자 상실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어(Soldo, 1981) 부양의 필요를 암시해주는 때문이다. Eu(1992)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이 건강상태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한 후에도 부양유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연령이 부모자녀간 의존적 관계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또한 주거형태에 대한 계획에서 연령이 많은 노인일수록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희망하거나, 노인들의 공동주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경란 등, 1995),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 중 근로소득이 감소하므로 생계비액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김태현 등, 1996) 노인의 연령은 노후생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였다.

#### 2)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거주선택의 범위가 다양해지므로 자신이 원하는 부양유형을 선택하기가 쉬워진다. 또한 교육수준은 부양유형에 대한 노인의 개인적 태도 및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독립심 및 개

인주의적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자녀로부터의 부양 기대가 적어지고 자녀와의 동거가능성이 감소된다(Mangen & Westbrook, 1988: 원영희, 1996). 임정빈 등(1995)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노후 기혼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부인의 학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중졸 이하의 집단에서는 '같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고졸 이상, 특히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가능한 한 같이 살지 않겠다' 또는 '절대로 같이 살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적인 부양을 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중년기 부인 및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의 주택으로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필 외, 1995).

#### 3) 직업

Beck(1984)은 직업지위가 높아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은퇴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갖는다고 하였다. 실제로 중년기를 대상으로 노년기 주택에 대해 조사한 연구 중 임정빈 외(1995)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미래의 주택으로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경필 외(1995)의 연구에서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종교

Martin(1989)의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진 한국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계희(1988)의 연구에서도 종교를 가진 노인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노인에 비해 전반적인 노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경필 외(1995)의 연구에서 중년층이 희망하는 노후주택유형은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5) 건강상태

노인의 건강상태는 부양유형을 결정할 때 일종의 자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Avery et al. 1989). 왜냐하면,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은 자신의 부양유형을

계획할 수 있는(Mutchier et al., 1998) 반면,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쁜 경우 경제적 자원이나 선호와는 별개로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노인시설에서의 의존적 부양이 불가피해진다(Soldo, 1981). 특히 공적 노인부양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노인들은 독립적 부양을 선호하여도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할 필요가 커진다(Kim, 1983). 이러한 현상은 젊은층에게도 나타나는데, 최성재(1993)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이들도 노후 생활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요양원에 입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6) 아들유무

아들유무는 우리나라 노인의 부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인데, 이는 아들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해 온 문화적 규범 때문이다(원영희, 1996). 즉, 한국노인은 아들로부터의 동거부양을 비롯 경제적 및 정서적 원조를 기대한다(조병은, 1990). 따라서 노부모는 아들과 동거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들이 없는 경우 딸과 동거하기보다는 따로 살 가능성이 많은데, 원영희(1996)의 연구결과에서도 아들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녀와 동거하는 의존적 부양을 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부인의 직업유무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은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지적, 경제적 조건을 갖춘 직업적 지위에 있을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주부가 취업했을 때, 그리고 직종이 전문직업인일 때 다른 직업인에 비해 은퇴계획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한 Foster(1996)의 연구결과에 의해 노후경제계획은 부인의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8) 거주지역

이가옥 등(1994)의 연구에서는 군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시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비해 자녀와 별거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Eu

(1992)의 연구에서도 농촌거주노인이 독립적 부양을 취하는 확률이 도시거주노인에 비해 컸는데, 이는 심각한 이농현상으로 인해 자녀들이 농촌을 떠난 후 노인들만 남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적어진 것과 관계가 있다. 박경란 등(1995)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주거유형계획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임정빈 등(1995)의 중년기 대상 연구에서는 서울의 강북지역 거주자가 강남지역 거주자보다 노후주택유형으로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가계총소득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녀와의 별거, 즉 독립적 부양은 동거에 비해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따라서 독립적 부양은 고소득과 관계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Golescheider & DeVanzo, 1989). Eu(1992)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자원은 부양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인 부양유형을 취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주거로 노인임대주택이나 노인주거단지 등 시설주거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는데(박경란 외, 1995),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노인이 실버타운을 이용하려는 욕구와 구별되는 것이다. 한편 김성숙 외(1992)의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결과를 통해 중년층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의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계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0) 가계금융자산

중년기 가정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실태를 조사한 이기영 외(1995)의 연구에서는 현재 노후준비가 되어있는 가정의 자산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산에 차이가 있었으며, 문숙재·김순미(1997)의 연구에서도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을 하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금융자산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김성숙 외(1992)의 연구에서는 중년기가계가 노

후준비방법으로 금융저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가계의 금융자산정도에 따라 노후생활계획의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11) 주택소유형태

Martin(1989)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노인과 비교하여 한국노인의 부양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검토한 결과 집을 소유한 한국노인은 독립적인 부양을 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혔다. 즉, 정부 및 공공의 부양지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독립적 부양의 가능성은 매우 적어지므로 주택소유형태는 부양계획 및 주거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후부양계획, 노후주거계획, 노후경제계획의 세가지 측면에서 가계의 노후생활계획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중노년기 부부가계가 원하는 노후부양계획은 무엇이며, 부부가계의 관련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 및 노후부양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둘째, 중노년기 부부가계가 원하는 노후주거계획은 무엇이며, 부부가계의 관련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 및 노후주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셋째, 중노년기 부부가계가 원하는 노후경제계획은 무엇이며, 부부가계의 관련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 및 노후경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해서 종속변수인 노후생활계획은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노후에 원하는 부양유형, 주거유형, 생계비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변수로는 노후부양과 관련된 요인으로

서 가계총소득, 가계금융자산액, 주택소유형태, 아들 유무, 종교유무, 연령, 건강상태를 선정하였다. 이밖에 교육수준과 직업, 부인의 취업유무, 거주지역을 개인의 인적자본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변수로 포함시켰다. 이들 설명변수들은 변수들의 성격에 따라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sup>1)</sup>, 가족 및 가구관련요인, 재정관련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2. 연구방법

####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6,729명을 다단계 표본추출확률방법으로 표집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계의 노후생활계획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료중 부부가 모두 응답한 2,214가계에서 가구주가 취업하고 있고<sup>2)</sup> 연령이 45세이상<sup>3)</sup>인 중년기 이후의 가계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중년기 이후의 부부가계를 기준으로 한 것은 중년기부터 노후생활 및 은퇴계획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임정빈 외, 1985; 김태현·이인수, 1986). 이러한 절차에 의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표본가계는 713가계였다.

#### 2) 분석방법

표본가계의 일반적 특성과 노후생활계획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 1) 가구주와 배우자의 관련요인간 상관관계가 높았기 때문에 가구주 관련요인만을 연구문제에 포함하였다.
- 2) 1987 한국가구패널조사의 자료중 노후생활계획에 대한 문항은 취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표본선정시 가구주가 비취업인 가계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3) Smythe(1968)은 생애주기를 형성기, 성장기, 축소기 및 은퇴기의 4단계로 구분하였고, 연령에 따라 35세미만은 형성기, 35세-44세는 성장기, 45-54세는 축소기, 그리고 55세이상은 은퇴기로 보았다(Hong & Kim, 1987). 따라서 축소기부터는 중년기 이후로 간주할 수 있다.





지하였으며, 가구주의 직업으로는 봉급생활자가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많은 36.0%를 차지하였고, 가구주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는 54.6%, 건강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가계는 28.1%였다.

한편 표본가계중 아들이 있는 가계는 69.1%였고, 부인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13.9%였다. 표본가계가 거주하는 지역은 군부지역이 가장 많은 31.6%인 반면, 서울·광역시 및 중소도시는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주택을 소유한 가계는 표본가계중 84.9%였다. 표본가계의 월평균 총소득액은 약 198만원을 보여, 통계청, 도시가계연보(1996)의 월평균소득액이 2,152,7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적었고, 보유

하고 있는 총금융자산액은 약 1,145만원을 나타냈다.

## IV. 결과 및 해석

### 1. 노후부양계획

#### 1) 노후부양계획실태

노후생활계획 중 부부가계가 원하는 노후부양유형에 대해 살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표본가계 중 독립적인 부양을 계획하는 가계는 81.1%를 차지한 반면, 자녀나 시설 등에 의존하려는 계획을 갖는 가계는 18.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의존적 부양의 비율이 1984년에 83.3%, 1989년에 68.2%로 나타난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5, 1989)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자녀에게 부양을 의존하는 기존의 부양형태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노후부양에 대해 독립적인 태도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노후생활계획을 연령집단별로 보면, 45-54세 가계의 92.7%, 55-64세 가계의 78.2%, 65세 이상 가계의 53.0%가 독립적부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집단이 낮아질수록 독립적인 부양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중년 부부가 노인이 되었을 때 부모만의 독립적 생활을 원하는 비율이 81.1%로 나타난 주택공사(1993)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의존적 부양의 구체적인 부양방법을 살펴 보면, 전체표본가계의 80%가 장남부부에게 노후를 의존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장남이외의 아들부부에게 의존하려는 경우도 4.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아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양로원이나 병원 등과 같은 전문시설에 의존하려는 경우는 전체표본가계의 5.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45-54세 집단에서 독립적인 부양을 하겠다고 계획한 사람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가 양로원, 병원 등 전문시설에 의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결과를 고려할 때 중년층의 노후생활설계를 위해 생활지원 서비스 및 전문사회

<표 2> 표본가계의 일반적 특성 (N= 713)

범주변수	빈도	%	
가구주의 연령	45-54세 가계	356	49.9
	55-64세 가계	257	36.1
	65세이상 가계	100	14.0
가구주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385	54.0
	고졸	228	32.0
	전문대졸이상	100	14.0
가구주의 직업	봉급생활	257	36.0
	자영업/자유업	232	32.5
	농림수산업	224	31.5
가구주의 종교	있음	389	54.6
	없음	324	45.4
가구주의 건강상태	만족스럽다	513	71.9
	불만족스럽다	200	28.1
아들유무	있음	493	69.1
	없음	220	30.9
부인직업유무	있음	99	13.9
	없음	614	86.1
거주지역	서울	169	23.7
	광역시	159	22.3
	중소도시	160	22.4
	군부지역	225	31.6
주택소유형태	자가	605	84.9
	임대 및 기타	108	15.1
연속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주의 연령(세)	55.55	7.94	
가계총소득액(만원/월)	197.75	143.83	
가계금융자산액(만원)	1145.22	1718.83	

〈표 3〉 노후부양계획실태

표본가계 노후부양계획	전체가계 빈도 ( % )	45-54세가계 빈도 ( % )	55-64세가계 빈도 ( % )	65세이상가계 빈도 ( % )
독립적 부양	578 ( 81.1)	330 ( 92.7)	201 ( 78.2)	53 ( 53.0)
의존적 부양	135 ( 18.9)	26 ( 7.3)	56 ( 21.8)	47 ( 47.0)
장남부부	108 ( 80.0)	19 ( 73.1)	49 ( 87.5)	40 ( 86.8)
장녀부부	3 ( 2.2)		1 ( 1.8)	2 ( 3.8)
장남이외의 아들부부	6 ( 4.4)	1 ( 3.8)	3 ( 5.4)	2 ( 3.8)
양로원	7 ( 5.2)	4 ( 15.4)	2 ( 3.6)	1 ( 1.9)
병원등전문기관	1 ( 0.7)	1 ( 3.8)	-	-
기타	4 ( 3.0)	1 ( 3.8)	1 ( 1.8)	2 ( 3.8)
합 계	713 (100.0)	356 (100.0)	257 (100.0)	100 (100.0)

복지시설의 요구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2) 관련변인에 따른 노후부양계획

부부가계가 계획하는 노후부양유형을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족관련변인 및 재정관련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구주의 연령집단별로는, 45-54세 집단이 독립적 부양형태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립적인 부양형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가옥(1994)의 연구에서 저연령층의 노인일수록 독립적 부양을 선호하나,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의존적 부양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의존적인 부양형태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적 부양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가옥(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가구주가 봉급생활자나 자영자유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계가 의존적 부양유형을 원했는데, 이는 교육수준 및 직업이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독립적인 부양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가옥(1994)의 연구에서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경제적 자립형 노인이 자녀 및 친지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경제적 의

존형 노인보다 앞으로도 독립적 부양을 희망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상태가 희망하는 부양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독립적인 부양형태를 더 많이 원하였으며, 건강상태에 불만족하는 집단에서는 의존적인 부양을 원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은 노년기의 신체적 능력 저하 및 만성적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강상태의 저하 및 이로 인한 불만족 상황은 결과적으로 후기 노년기에 불가피하게 의존적 부양을 필요로 하게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아들이 있는 가계에서 독립적인 부양형태를 더 많이 원하였으며, 부인이 직업을 갖고 있는 가계도 의존적인 부양형태보다 독립적인 부양형태를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군부지역으로 갈수록 의존적인 부양형태를 원하는 가계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계는 거의 대부분이 독립적인 부양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독립적인 부양형태를 원하는 가계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54세인 반면, 의존적인 부양형태를 원하는 가계의 경우는 62세로서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인 부양

을 원하는 가계의 가계총소득액과 가계금융자산액이 각각 220만원, 1339만원, 의존적인 부양을 원하는 가계의 평균총소득액과 가계금융자산액은 107만원과 358만원으로서 의존적인 부양을 원하는 가계의 총소득액이 독립적인 부양을 원하는 가계의 절반수준을 못미쳤으며 금융자산액도 약 27%정도로서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낮은 경제적 자립도로 인해 의존적 부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노후부양유형은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종교유무, 건강상태, 아들유무, 부인의 직업유무 및 거주지역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노후부양계획 영향요인 분석

부부가계가 원하는 노후부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표 5참조>,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가구주의 연령, 종교유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관련변인으로는 거주지역만이 유의한 반면, 재정관련요인으로는 가계총소득

<표 4> 관련변인에 따른 노후부양계획

(N=713)

범주변수	노후부양계획	독립적 부양	의존적 부양	$\chi^2/t$ 값
		578 (81.07) 빈도 (%)	135 (18.93) 빈도 (%)	$\chi^2$
가구주의 연령	45-54세	326 ( 91.6)	30 ( 8.4)	99.742***
	55-64세	199 ( 77.4)	58 ( 22.6)	
	65세이상	53 ( 47.0)	47 ( 53.0)	
가구주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75 ( 71.4)	110 ( 28.6)	50.888***
	고졸	209 ( 91.7)	19 ( 8.3)	
	전문대졸이상	94 ( 94.0)	6 ( 6.0)	
가구주의 직업	봉급생활	233 ( 90.6)	24 ( 9.4)	80.735***
	자영업/자유업	207 ( 89.2)	25 ( 10.8)	
	농림수산업	138 ( 61.6)	86 ( 38.4)	
가구주의 종교	있음	331 ( 85.1)	58 ( 14.9)	9.031***
	없음	247 ( 76.2)	77 ( 23.8)	
가구주의 건강상태	만족스럽다	441 ( 85.9)	72 ( 14.1)	28.596***
	불만족스럽다	137 ( 68.5)	63 ( 31.5)	
아들유무	있음	424 ( 86.0)	69 ( 14.0)	33.642***
	없음	148 ( 67.3)	72 ( 32.7)	
부인직업유무	있음	92 ( 92.9)	7 ( 7.1)	10.541***
	없음	468 ( 79.2)	128 ( 20.8)	
거주지역	서울시	160 ( 94.6)	9 ( 5.4)	60.116***
	광역시	137 ( 86.2)	22 ( 13.8)	
	중소도시	134 ( 83.8)	26 ( 16.2)	
	군부지역	147 ( 65.3)	78 ( 34.7)	
주택소유형태	자가	488( 80.7)	117 ( 19.3)	0.426
	임대 및 기타	90 ( 83.3)	18 ( 16.7)	
연속변수		평균 (S.D.)	평균 (S.D.)	t 값
가구주의 연령(세)		54.06 ( 7.13)	61.95 ( 8.07)	11.278***
가계총소득액(만원)		220.14 ( 145.15)	106.88 ( 94.41)	-8.784***
가계금융자산액(만원)		1339.24 (1830.66)	358.14 (760.80)	-6.230***

\*\*\*p < 0.001

액, 가계금융자산액 및 주택소유형태가 모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45-54세인 가계와 55-64세인 가계는 65세이상인 가계에 비해 독립적인 부양유형을 원하는 가능성이 높았으며, 45-54세 가계가 55-64세 가계에 비해 독립적인 부양형태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oldo(1981)가 노인의 연령은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경제적 상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양의 필요를 암시해준다고 한 견해나 Eu(1992)의 연구 결과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인 부양형태를 취할 확률이 적어졌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가구주의 종교 유무도 노후부양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가구주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 노후생활을 보다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가구 및 가족관련 요인 중에서는 거주지역이 노후부양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가계에 비해 광역시, 중소도시 및 군부지역에 거주하는 가계가 의존적인 부양형태를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보전원(1990)의 조사에서 농촌보다 도시거주노인이 독립적 부양의 선호율이 더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로 갈수록 독립적 부양을 위한 시설이 더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계총소득액이 많을수록, 가계가 보유하고

〈표 5〉 노후부양계획에 대한 Logistic 분석

변 수	전체가계(713)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r > Chi-Square
<b>인구통계학적 요인</b>			
가구주의 연령(65세이상)			
45-54세	-1.871	0.365	0.0001
55-64세	-1.072	0.300	0.0004
가구주 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0.490	0.301	0.1032
전문대졸 이상	-0.361	0.530	0.4958
가구주 직업(봉급생활)			
자영업/자유업	0.068	0.331	0.8370
농림수산업	0.310	0.385	0.4208
가구주 종교(있음)	-0.479	0.227	0.0347
가구주 건강상태 (만족)	-0.270	0.237	0.2549
<b>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b>			
아들유무(있음)	0.308	0.278	0.2670
부인직업유무(있음)	-0.670	0.450	0.1365
거주지역(서울)			
광역시	0.978	0.978	0.0256
중소도시	1.049	1.049	0.0208
군부지역	1.189	1.189	0.0111
<b>재정 관련요인</b>			
가계총소득액(만원)	-0.003	0.001	0.0154
가계금융자산액(만원)	-0.0004	0.0002	0.0016
주택소유형태(자가)	-1.067	0.356	0.0027
상수	0.936	0.545	0.0859
-2 Log Likelihood	190.707		0.0001

있는 금융자산액이 많을수록,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노후생활계획에 있어 독립적인 부양형태를 원하였는데 이는 재정상태가 좋으면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부양형태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자원이 많아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노인일수록, 주택을 소유한 노인일수록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인 부양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 Eu(1992)의 연구결과 및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노인의 부양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자원이라고 보고한 Martin(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자원을 많이 가진 노인들이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독립적 부양을 선택함으로써 선진국에서는 독립적 부양유형이 '우수재'로 인식된다는 Burch et al(1987)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노년기의 경제적 자원이 독립적 부양을 설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2. 노후주거계획

### 1) 노후주거계획실태

부부가계가 원하는 노후주거계획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표본가계가 노후에 원하는 주택형태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아 74.5%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65세 이상가계에서는 92.9%가 단독주택을 원했다. 45-54세 집단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원하

는 가계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많은 30.4%였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관련변인에 따른 노후주거계획

부부가계가 노후에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유형을 관련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65세 이상 집단이 단독주택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경희(1996)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형태로는 단독주택(67.6%)이 가장 많았으며, 중년층의 노후 희망주택이 성별, 연령, 학력, 직업에 관계없이 단독주택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고경필 외, 1995; 오찬욱, 1993; 유혜정, 1992)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을 원했으며, 전문대졸이상의 가계에서는 53%가 공동주택을 선호하였다. 가구주가 봉급생활자나 자영업 및 자유업에 종사하는 가계보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계에서 단독주택을 가장 많이 원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경필 외(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지역의 주택시장에 단독주택이 더 많고 지금까지 주로 단독주택에서 생활했던 생활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들이 있는 가계에서 단독주택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와의 동거시 공간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므로(이연숙 등, 1995), 주택구조 상 사생활보장이 가능한 단독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군부지역으로 갈수록 단독주택을 원했는데, 이는

<표 6> 노후 주거계획실태

노후 주거계획	전체가계 빈도 (%)	45-54세가계 빈도 (%)	55-64세가계 빈도 (%)	65세이상가계 빈도 (%)
노후 주택유형	702 (100.0)	352 (100.0)	251 (100.0)	99 (100.0)
단독주택	523 ( 74.5)	225 ( 63.9)	206 ( 82.1)	92 ( 92.9)
공동주택 : 아파트	153 ( 21.8)	107 ( 30.4)	41 ( 16.3)	5 ( 5.1)
연립주택 및 빌라	12 ( 1.7)	9 ( 2.6)	2 ( 0.8)	1 ( 1.0)
다세대 주택	3 ( 0.4)	2 ( 0.6)	1 ( 0.4)	0 ( 0.0)
기타	11 ( 1.6)	9 ( 2.6)	1 ( 0.4)	1 ( 1.0)

<표 7> 관련변인에 따른 노후주거계획

(N=713)

범주변수	노후주거계획	단독주택 523 (73.35)	공동주택 190 (26.65)	$\chi^2$
		빈도 (%)	빈도 (%)	
가구주의 연령	45-54세	225 ( 63.20)	131 ( 36.80)	42.639***
	55-64세	206 ( 80.16)	51 ( 19.84)	
	65세이상	92 ( 92.00)	8 ( 8.00)	
가구주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321 ( 83.08)	64 ( 16.62)	58.683***
	고졸	155 ( 67.98)	73 ( 32.02)	
	전문대졸이상	47 ( 47.00)	53 ( 53.00)	
가구주의 직업	봉급생활	158 ( 61.48)	99 ( 38.52)	54.201***
	자영자유업	162 ( 69.83)	70 ( 30.17)	
	농림수산업	203 ( 90.63)	21 ( 9.38)	
가구주의 종교	있음	284 ( 73.01)	105 ( 26.99)	0.052
	없음	239 ( 73.77)	85 ( 26.23)	
가구주의 건강상태	만족스럽다	366 ( 71.35)	147 ( 20.62)	3.769
	불만족스럽다	157 ( 78.50)	43 ( 6.03)	
이들유무	있음	339 ( 68.76)	154 ( 31.24)	17.216***
	없음	184 ( 83.64)	36 ( 16.36)	
부인직업유무	있음	68 ( 68.69)	31 ( 31.31)	1.280
	없음	455 ( 74.10)	159 ( 25.90)	
거주지역	서울시	97 ( 57.40)	72 ( 42.60)	60.876***
	광역시	105 ( 66.04)	54 ( 33.96)	
	중소도시	117 ( 73.13)	43 ( 26.88)	
	군부지역	204 ( 90.17)	21 ( 9.33)	
주택소유형태	자가	455 ( 75.21)	150 ( 24.79)	7.028**
	임대 및 기타	68 ( 62.96)	40 ( 37.04)	
연속변수		평균 (S.D.)	평균 (S.D.)	t 값
가구주의 연령(세)		56.65 ( 8.13)	52.54 ( 6.52)	-6.942***
가계총소득액(만원)		183.93 ( 145.87)	235.68 ( 131.10)	4.286***
가계금융자산액(만원)		1358.91 (1796.25)	1664.33 (1850.83)	1.843

\*\* p < 0.01, \*\*\* p < 0.001

군부지역으로 갈수록 단독주택의 보급율이 높아 노인들이 이미 친숙해진 주거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박경란(1995)의 연구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단독주택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저층, 고층아파트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공동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본 결과와 함께 지역에 따라 원하는 노후주택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밖에도 단독주택을 원하는 가계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56.65세인 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희망하는 가계는 52.54세로서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며, 단독주택을 원하는 가계의 평균소득액은 183.93만원, 공동주택을 희망하는 집단은 235.68만원으로 평균소득이 많을수록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노후주거계획 영향요인 분석

노후에 희망하는 주택유형으로 단독주택을 계획

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가구주가 45-54세인 집단이 65세 이상인 집단보다 공동주택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인기에 단독주택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들(이경희, 1996; 고경필 외, 1995; 오찬옥, 1993)과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문대졸이상 집단이 공동주택을 희망하고 있어 고경필(1995)의 연구에서 중졸이하 집단에서 고졸이나 대졸집단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가구주의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이 단독주택을 더 희망하고

있었으며, 군부지역보다는 규모가 큰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공동주택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북지역 노인들은 대상으로 한 심영 등(1996)의 연구에서는 단독주택 거주 노인들의 주거만족도가 아파트 거주노인에 비해 낮게 나타남으로써 주택의 설비 및 근린시설, 유지관리의 편리성 면에서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결과와 비교해볼 때, 노인들이 미래의 주거로서 단독주택을 선호한다면 유형상으로는 단독주택을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노후주거계획에 대한 Logistic 분석

변 수	전체가계(559)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r > Chi-Square
<b>인구통계학적 요인</b>			
가구주의 연령(65세이상)			
45-54세	1.356	0.520	0.0091
55-64세	0.934	0.522	0.0737
가구주 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0.323	0.237	0.1723
전문대졸 이상	1.001	0.304	0.0010
가구주 직업(봉급생활)			
자영업/자유업	-0.297	0.222	0.1796
농림수산업	-0.784	0.372	0.0352
가구주 종교(있음)	-0.083	0.205	0.6870
가구주 건강상태 (만족)	-0.140	0.248	0.5711
<b>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b>			
아들유무(있음)	0.130	0.260	0.6185
부인직업유무(있음)	0.033	0.273	0.9048
거주지역(군부지역)			
서울	1.190	0.361	0.0010
광역시	0.823	0.360	0.0220
중소도시	0.789	0.346	0.0224
<b>재정 관련요인</b>			
가계총소득액(만원)	-0.002	0.001	0.0724
가계금융자산액(만원)	0.00004	0.0001	0.4732
주택소유형태(자가)	-0.224	0.260	0.3905
상수	-2.234	0.681	0.0011
-2 Log Likelihood	86.918		0.0001



### 3. 노후경제계획

#### 1) 예상 생계비 실태

노후경제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노후 예상생계비 액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노후 월평균 생계비는 약 97만원이었으며, 연령집단별로는 45-54세 집단의 경우 약 110만원, 55-64세 집단은 84만원, 65세 이상 집단은 65만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예상 생계비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출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며(중앙일보, 1996년 9월 8일자) 노인가계의 생활이 비노인가계에 비해 점차 단순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관련변인에 따른 노후경제계획

노후를 위해 계획하는 월평균생계비를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구 및 가족관련변인 및 재정관련변인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다. 월평균생계비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45-54세 가계의 경우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예상생계비액이 적어졌다. 이는 노인가계의 총지출액이 비노인가계보다 적다는 문숙재·김순미(1997), 김연정(1998)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이 적어지면서 지출액 또한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계비액이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과지출의 확률이 커진다는 Hanna et al.(199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의 직업과 생계비와의 집단간 차이를 보면 자영자유업, 봉급생활자, 농림수산업자의 순으로 노후 예상생계비액이 현저히 감소되었는데,

이는 항상소득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출하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자유업자나 농림수산업자의 초과지출이 더 낮다는 김연정(1998)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자영자유업자의 노후 생계비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영업자의 경우 은퇴연령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하여 스스로 생계비를 마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식생활의 상당부분을 가정생산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생계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만족스러운 경우 예상 생계비액이 많았다.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할수록 노후생계비를 독립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여 여가활동비, 용돈 등의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들이 있는 집단에 비해 아들이 없는 집단이 노후 생계비액을 적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들로부터의 경제적 부양의 가능성이 없고 동시에 아들세대 및 손자녀세대와의 교류로 인한 추가의 생계비 지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의 계획생계비액이 가장 많았으며, 군부지역으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농촌지역의 가계지출액은 도시지역의 86%로 농촌지역 거주가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제적 지위에 있다고 한 Schwenk(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 3) 노후경제계획 영향요인 분석

노후의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예상되는 생계비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노후 생계비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직업, 재

<표 9> 노후경제계획실태

(단위 : 만원)

노후 경제계획	전체가계 평균 (S.D.)	45-54세가계 평균 (S.D.)	55-64세가계 평균 (S.D.)	65세이상가계 평균 (S.D.)
노후 월평균 생계비	97.32 (54.26)	109.78 (57.98)	84.21 (44.47)	64.67 (35.44)

〈표 10〉 관련변인에 따른 노후 월평균생계비액(만원)

(N=553)

범주변수	노후월평균생계비	빈도 ( % )	평균	D#	T/F 값
가구주의 연령	45-54세	318 ( 57.50)	109.78	A	23.91***
	55-64세	190 ( 34.35)	84.21	B	
	65세이상	45 ( 8.14)	64.67	C	
가구주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58 ( 46.65)	77.25	C	53.36***
	고졸	204 ( 37.25)	104.66	B	
	전문대졸이상	91 ( 16.46)	137.80	A	
가구주의 직업	봉급생활	229 ( 41.41)	99.96	B	42.65***
	자영자유업	197 ( 35.62)	116.17	A	
	농림수산업	127 ( 22.97)	63.35	C	
가구주의 종교	있음	320 ( 57.87)	96.23	A	0.31
	없음	233 ( 42.13)	98.82	A	
가구주의 건강상태	만족스럽다	426 ( 77.03)	101.77	A	12.74***
	불만족스럽다	127 ( 22.97)	82.40	B	
아들유무	있음	412 ( 74.50)	102.33	A	14.08***
	없음	141 ( 25.50)	82.70	B	
부인직업유무	있음	90 ( 14.47)	101.89	A	0.76
	없음	463 ( 85.53)	96.44	A	
거주지역	서울시	154 ( 27.85)	126.56	A	31.67***
	광역시	132 ( 23.87)	95.87	B	
	중소도시	130 ( 23.51)	93.46	B	
	군부지역	137 ( 24.77)	69.53	C	
주택소유형태	자가	467 ( 84.55)	96.38	A	0.91
	임대 및 기타	86 ( 15.45)	102.44	A	
연속변수		빈도(%)	평균	S.D.	
가구주의 연령		553(100.00)	53.99	7.16	
가계총소득액(만원)		549(100.00)	221.83	145.09	
가계금융자산액(만원)		468(100.00)	1605.38	1910.74	

\*\*\* p &lt; 0.001

#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정관련요인 중 가계금융자산액이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가계에 비해 고졸인 가계와 전문대졸 이상인 가계의 예상 노후생계비액이 많았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 Zhong 등(1993)의 연구에서 대졸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소득과 순자산 등 경제적 수준이 더 높다고 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직업지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후생활에서도 경제적 수준의 하락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적어 더 많은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의 직업이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자유업인 경우 더 많은 생계비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영자유업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노년기에도 직업생활을 계속하고 근로소득을 가짐으로써 더 많은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계금융자산액은 노후생계비액과 정의 관계를 보여, 현재 금융자산액이 많을수록 노후생계비액을 더 높게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금융자산액은 노후의 재정상태를 결정짓고 노후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되는 요인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노인들

〈표 11〉 노후 월평균생계비액에 대한 OLS 분석

변 수	전체가계(534)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r > Chi-Square
인구통계학적 요인			
가구주의 연령(65세이상)			
45-54세	-0.104	2.133	0.9612
55-64세	1.399	2.068	0.4992
가구주 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3.287	1.352	0.0154
전문대졸 이상	8.031	1.887	0.0001
가구주 직업(보급생활)			
자영업/자유업	4.121	1.343	0.0023
농림수산업	1.510	1.956	0.4411
가구주 종교(있음)	-0.632	1.164	0.5874
가구주 건강상태(만족)	2.077	1.383	0.1338
가족 및 가구 관련요인			
아들유무(있음)	1.096	1.423	0.4415
부인직업유무(있음)	-1.719	1.620	0.2889
거주지역(서울)			
광역시	-0.783	1.678	0.6411
중소도시	1.076	1.713	0.5302
군부지역	-1.872	1.998	0.3493
재정 관련요인			
가계총소득액(만원)	0.007	0.005	0.1461
가계금융자산액(만원)	0.001	0.0003	0.0006
주택소유형태(자가)	2.323	1.593	0.1454
상수	24.836	2.937	0.0001
F-VALUE	5.417		0.0001
R SQUARE		0.1446	

은 생계비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층의 노후생활계획의 실태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후생활계획을 노후부양계획, 노후주거계획, 노후경제계획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중노년기가계가 노후의 생활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부양형태는 독립적 부양이며, 특히 중년기가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했다. 따라서 현

재 중년기가계는 노후에 자신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장기적인 생활설계 및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들이 노년기에 이르러 신체적 노쇠현상과 건강의 상실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워질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사조력, 개인간호, 주택관리, 단기시설보호, 교통서비스 등의 부양보완시설 및 서비스가 다양화됨으로써 독립적 부양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군부지역 거주자가 서울지역 거주자에 비해 의존적 부양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청장년층의 도시

이동율이 높아 노부모세대만 농촌에 남겨져서 결과적으로 자녀의존부양의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 노인의 노후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노후부양계획은 연령 이외에도 종교유무, 거주지역 및 재정관련변수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노후를 준비하는 개개인의 부양능력 및 경제적 자원, 그리고 지역사회 부양형태에 대한 규범 및 다양한 부양보완시설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획,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후주거로서 단독주택을 계획하는 경향은 연령이 많거나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거나 군부지역 거주자인 경우 특히 강했다. 이는 고령자들이 지금까지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해 왔으므로 단독주택을 친숙하고 이상적인 주거환경으로 생각하는 생활감정이 반영된 것으로서, 단독주택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정서적 적응과 부양에 바람직할 것이나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신체적 능력이 분세시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후주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독주택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대행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주거유형이나, 현재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와 유사한 설비와 관리방법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줌으로써 정착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질적으로 향상된 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앞으로 연구되고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노후주거에 대한 계획에 차이가 있는 것은 대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의 노년층을 위한 주거계획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노후경제계획으로서 노후생계비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의 지속적인 소득원이 없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나 노년기의 욕구가 감소되었다기 보다는 이의 충족을 위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서 노년기 생활의 질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원하는 생활

의 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노령수당의 지급 등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시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생계비의 독립적 조달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취업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노년기 생활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노년기 생활계획영역을 개념적으로 부양계획, 주거계획 및 경제계획으로 한정시켰으나, 이들은 실제로는 상호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다. 또한 각 생활계획영역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생활계획의 경향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장점을 갖는 반면 각 생활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탐색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주거를 취득하거나 변경시키는데는 상당한 경제적 자원이 지출되어야 하므로 노후주거계획에도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소득이나 금융자산, 주택소유형태 등 경제적 자원은 노후주거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노년기 생활계획의 영역에 대한 정교한 모형의 구성과 영향요인의 분석을 통해 노후생활계획의 구체적 제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고경필·윤재웅(1995), 중년층의 노년기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6(1), 89-101.
- 2) 김대년(1992), 대도시 가족의 주거생활역사(Housing History)에 관한 연구(I)-주택소유 형태, 주택유형, 거주지역,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8), 71-80.
- 3) 김성숙·박윤아(1992), 도시가계의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45-57.
- 4) 김연정(1998),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5) 김태현·전길양(1997), 한국의 노인가족부양의 현황과 과제, 「각국 노인의 가족부양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6)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6.
- 7) 문숙재·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 8) 민재성(1993),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9) 박경란·제미경·오찬옥(1995),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족, 소비,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공모과제
- 10) 박재간(1997) 「각국의 고령자주택정책-고령자주택의 정의·역할·특징」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 11)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2) 서승희·이경희(1994), 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2권 2호, 41-49.
- 13) 신영숙(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05-120.
- 14) 심영·김대년·조명희·조영희(1996),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단독 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권 3호, 1-20.
- 15) 오찬옥 (1993) 「중년층의 노후생활계획을 통해 본 한국형 노인주택 대안의 잠재적 효용성, 고령화사회의 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경춘사.
- 16) 원영희(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17) 이가옥(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8) 이경희(1996), 도시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주거욕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가정문화논총, 10집.
- 19) 이기영 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Ⅱ):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15-128.
- 20) 이연숙·신화경 (1995), 노인동거가족의 공간적 환경 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구주거학회지, 6(2), 91-100.
- 21) 임정빈·조재순·이기영·이연숙·김외숙·고성혜·임혜경·송혜림(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 실태와 문제(Ⅰ):주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3), 279-290).
- 22) 전명숙·강순주(1995), 서울시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노인주거환경(Ⅰ), 한국주거학회지, 6(1)
- 23) 조재순·신경주·곽인숙·최재순(1995), 미국의 노인주거 관련 연구 경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권 10호, 13-8
- 24) 최성재(1993), 유료 노인복지시설 운영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5) 홍형옥(1986),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26) Avery, R., Speare & L. Lawton(1989), Social Support, Disability and Independent Living of Elderly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ging Studies* 3, 279-293.
- 27) Burch, T. K. & B. J. Matthe(1987), Household Formation in Developed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 495-511.
- Cavanaugh, J. C.(1990), *Adult Development and Aging*, Belmont, CA:Wadsworth Publishing CO.
- 28) Goldscheider, F. K., & J. DaVanzo(1989), Pathways to Independent Living in Early Adulthood: Marriage, Semiautonomy, and Pmmarital Residential Independence, *Demography* 26(4), 545-564.
- 29) Hanna, S., Wang, H. & Lindamood, S.(1994), Do Elderly Households Have Rational Financial Plans: Evidence from Consumer Expenditure Data, 「AFCPE 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Public Policy and Economic Well-being :The Financial

- Counselor's Role, 272-288.
- 30) Hongsook Eu(1992), Health Status and Social and Demographic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s among the *Korean Elderly*,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2).
- 31) Martin, L. G.(1989),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in Fiji,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Demography* 26(4), 627-644.
- 32) Mutchier, J.E., & J. A. Burr(1998), Household and Nonhousehold Living Arrangements in Later Life: A Longitudinal Analysis of a Social Process,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 33) Schwenk, N.E.(1990), A Comparison of Household Headed by 55 to 65 Years of Aged:Retired and Employed, *Family Economic Review* 3(3), 19-25.
- 34) Soldo, B. J.(1981), The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in the Near Future, New York: Academic Press.
- 35) Zhong, L.X., Titus, P.M. & Johnson, D.P.(1993), The Diversity of Income and Net Worth of the Elderly, The Proceedings of ACCL, 74-81.